

수수료 등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

제 정 : 2017.05.29.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.) 제58조에 따라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투자자 간의 정당한 사유없는 차별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, 그 외 관련 법규(이하 "관련법규"라 한다)와 해당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서 "수수료 등"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,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,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보수 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(집합투자업자 보수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당사자간 정하는 매입보수, 매각보수, 특별용역보수 등을 포함한다.)
 - 나. 성과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다. 판매보수 :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라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·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 - 마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 운

영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 부터 받는 금전

2. 수수료

- 가. 판매수수료 :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- 나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.
- 다. 투자자문수수료 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 또는 투자자문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, 그 투자자문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제4조 (수수료 등의 부과기준)

-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,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각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성과보수는 법 제86조,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설명서(투자제안서 포함)와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 - 2.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동법 시행령 제77조 4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3.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.
 - 4. 투자자문수수료의 금액 또는 비율, 계산방법,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.

제5조 (수수료 부과절차)

-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,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·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등의 비율 또는 금액,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② 회사의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. 다만 기존 상품과 운용상의 중요 변경이 없는 유사한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등을 신규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의 합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.
- ⑤ 회사는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·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
제6조 (수수료의 인상)

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회사,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,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에 정한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제7조 (설명의무)

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,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함께 이 규정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8조 (투자광고)

- ① 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 5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, 판매회사, 신탁업자,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9조 (공시 및 통보)

회사가 이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는 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보수와 수수료는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비용과 판매수수료 현황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이 규정 시행전에 정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.